

2024년도 에너지전환포럼 정관 변경 사항(신구조문대비표)

내용	기존 정관	신 정관
(추가) 수익사업	<p>제3조(사업) 포럼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세미나, 토론회 등을 통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제안활동 2. 에너지전환 정책입법에 대한 건의 및 지원활동 3. 에너지전환 관련 정보제공 및 소통 활동 4. 에너지전환을 실현을 위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활동 5. 에너지전환 관련 자체 연구 및 외부의 연구 활동 6. 에너지전환 관련 외국 및 국제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활동 7. 에너지전환 실현을 위한 교육·출판, 전시·홍보사업 8. 기타 포럼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	<p>제3조(사업) 포럼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세미나, 토론회 등을 통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제안활동 2. 에너지전환 정책입법에 대한 건의 및 지원활동 3. 에너지전환 관련 정보제공 및 소통 활동 4. 에너지전환을 실현을 위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활동 5. 에너지전환 관련 자체 연구 및 외부의 연구 활동 6. 에너지전환 관련 외국 및 국제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활동 7. 에너지전환 실현을 위한 교육·출판, 전시·홍보 및 판촉물 등의 판매사업 8. 기타 포럼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
(변경) 가입절차	<p>제5조(회원의 자격) ①포럼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여 별지서식에 따른 가입신청서와 입회비를 납부하고, 상임공동대표와 공동대표(이하'공동대표단')의 입회승인을 받아 회원 자격을 얻는다. ②회원의 자격 및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5조(회원의 자격) ①포럼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여 <u>소정의 가입 절차에 따라</u> 회원 자격을 얻는다. ②회원의 자격 및 회비 등에 관한 <u>세부 사항</u>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.</p>

<p>(변경, 추가 및 삭제) 임원의 종류와 정수 규정</p>	<p>제10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①포럼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</p> <p>1. 공동대표:5인 내외 (상임공동대표 포함)</p> <p>2. 감사 : 2인 이내</p> <p>3. 이사 : 3인 이상 50인 이내 (등기이사 포함)</p> <p>4. 연구이사 : 50인 이내</p> <p>㉠ 제1항의 임원 중 감사 임원의 정수는 선거공고 전 이사회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해야 한다.</p>	<p>제10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①포럼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</p> <p>1. 공동대표 : 5인 내외(상임공동대표 포함)</p> <p>2. 감사 : 1인 <u>이상</u></p> <p>3. 이사 :</p> <p><u>3.1. 등기 이사(상임공동대표 포함) 5인 이상 10인 이내</u></p> <p><u>3.2. 비등기 이사 50인 이내</u></p> <p>4. 연구이사 : 50인 이내</p> <p>(삭제)</p>
<p>(변경) 임원의 선출</p>	<p>제11조(임원의 선출) ①상임공동대표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</p> <p>㉠공동대표와 이사는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.</p> <p>㉡연구이사는 공동대표단이 협의하여 선임하되 에너지전환 관련분야의 인사가 골고루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㉢제1항 및 제2항 상세한 선출방법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. 다만, 포럼의 창립시 초대 임원의 선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11조(임원의 선출) ①상임공동대표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</p> <p>㉠공동대표와 이사는 총회에서 <u>인준받는다.</u></p> <p>㉡연구이사는 공동대표단이 협의하여 선임하되 에너지전환 관련분야의 인사가 골고루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㉢제1항 및 제2항 상세한 선출방법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. 다만, 포럼의 <u>창립 시</u> 초대 임원의 선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㉣등기대표는 1인으로 하며,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선출된 상임공동대표가 맡는다.</p>
<p>(삭제 및 추가) 임원의 선임 제한</p>	<p>제14조(법인 등기임원) ㉠등기대표는1인으로 하며,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선출된 상임공동대표가 맡는다. ㉡등기이사는3인 이상20인 이내로 구성하며,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선출된 이사 중에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. ㉢등기대표 이외의 임원은 법인등기 사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. ㉣등기임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임원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</p>	<p>(삭제)</p> <p>제14조(임원의 선임제한)</p> <p>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/5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.</p>

<p>(변경) 임기 및 보선</p>	<p>제15조(임기 및 보선)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②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③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</p>	<p>제15조(임기 및 보선) ①임원의 임기는 3년, <u>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</u>, 연임할 수 있다. ②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③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</p>
<p>(추가) 의결권 설명</p>	<p>제23조(총회의 의결사항 및 회원의 의결권) ①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. 임원의 선출 및 해임 3.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. 사업계획의 승인 5. 재산관리의 승인 6. 포럼의 해산 7.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8. 이사회로의 위임 사항 9. 그밖에 이에 준하는 중요사항 ② 개인회원 및 단체회원은 동등한 의결권을 갖는다.</p>	<p>제23조(총회의 의결사항 및 회원의 의결권) ①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. 임원의 선출 및 해임 3.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. 사업계획의 승인 5. 재산관리의 승인 6. 포럼의 해산 7.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8. 이사회로의 위임 사항 9. <u>그 밖에</u> 이에 준하는 중요사항 ② <u>권리회원(정회원)인</u>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은 <u>각 1표의</u> 의결권을 갖는다.</p>
<p>(추가) 총회의 정족수 및 의결</p>	<p>제24조(총회의 정족수 및 의결)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규정한다. ② 의사정족수는 사전에 서면으로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24조(총회의 정족수 및 의결) ①총회는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규정한다. ② <u>총회는 대면회의 또는 온라인 화상회의 그리고 이 두 종류의 회의를 병합한 대면 및 온라인 화상회의로 한다.</u> ③ <u>의사정족수는</u> 사전에 서면으로 위임한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</p>
<p>(단어 변경)</p>	<p>제25조(총회의 의사록) 총회 의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법인 등기임원 3인 이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.</p>	<p>제25조(총회의 의사록) 총회 의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<u>포럼 등기이사</u> 3인 이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.</p>
<p>(단어 변경, 추가)</p>	<p>제26조(의사 기록 날인 및 공증절차) 본 법인의 정관 제25조 의사록에 대한 기명날인 및 공증 대행자는 본 법인 등기임원 3인 이상으로 한다.</p>	<p>제26조(의사 기록 날인 및 공증절차) 본 <u>포럼</u>의 정관 제25조 의사록에 대한 기명날인 및 공증 위촉 대행자는 <u>본 포럼</u> 등기 임원 3인 이상으로 한다.</p>
<p>(추가) 이사회 의정족수 및 의결</p>	<p>제30조(이사회회의 정족수 및 의결) ①이사회는 의결권을 가진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</p>	<p>제30조(이사회회의 정족수 및 의결) ①이사회는 의결권을 가진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. ②이</p>

	것으로 한다. ㉔의사정족수는 사전에 서면으로 위임한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	<u>사회는 대면회의 또는 온라인 화상회의 그리고 이 두 종류의 회의를 병합한 대면 및 온라인 화상회의로 한다. 회의 출석과 서면은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.</u> ㉔의사정족수는 사전에 서면으로 위임한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(변경)	제31조(이사회회의 의사록) 이사회는 의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법인 등기임원 3인 이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.	제31조(이사회회의 의사록) 이사회는 의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<u>본 포럼 등기이사</u> 3인 이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.
(삭제 및 변경)	제32조(재산의 구분)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.	제32조(재산의 구분)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<u>한다.</u>
(삭제)	제34조(재원) 포럼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, 지정기부금, 정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의 지원금, 출연금, 사업에 따른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	제34조(재원) 포럼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, <u>자</u> 정기부금, 정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의 지원금, 출연금, 사업에 따른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(변경) 오타수정	제38조(사무처) ㉑포럼은 사무·회계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.	제38조(사무처) ㉑포럼은 <u>사무·회계처리를</u>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.
(변경) 공개일 변경	제43조(기부금 모금액 공개)포럼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31일까지 공개한다.	제43조(기부금 모금액 공개)포럼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<u>4월 30일</u> 까지 공개한다.
(변경) 오타수정	제44조(잔여재산의 처리) 포럼이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포럼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한다.	제44조(잔여재산의 처리) 포럼이 <u>해</u> 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포럼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한다.